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
----------	----

제출년월일 : 2007. 10. 10.

제출자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재무과장)

1. 제안사유

2006. 12. 30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 내용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 · 처분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안 제28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이미 규정됨.

나.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 대부사 사용 ·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규정 신설(안 제31조제2항)

다. 제38조의 조성원가 매각 근거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을 제42조로 인용조명 변경(안 제38조)

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보존부적합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39조)

▷ 중복성이 있는 1호와 4호중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이 작은 1호를 삭제

▷ 매각시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 할수 있는 규정 신설

마. 분수령의 설정 삭제(안 제43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관련규정 삭제

바.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한도액 인상(안 제63조)

▷ 총 보상금 한도액 : 1천만원 → 3천만원

▷ 필지별 보상금 한도액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제1항 ·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제38조 · 제42조 · 제47조 · 제84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 : 2007. 8. 2 ~ 2007. 8. 22(20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 마. 기타 : 공유재산 관리조례 표준개정안 송부
(부산시 회계재산담당관실 - 16125, 2007. 7. 2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1조 각 호외의 부분과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임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제38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제8항” 을 “영 제42조”로 한다.

제39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를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로, “(건물바닥 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 을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로, “있다.” 를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을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로 한다.

제39조제5호 중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를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1천만원” 을 “3천만원”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200만원” 을 “600만원” 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1백만원” 을 “300만원”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제31조(대부로 또는 사용료의 감면)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로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 3. (생략)</p>	<p>제31조(대부로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로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p>

현 행	개 정 안
<p>제38조 (조성원가 매각) 영 제27조 <u>제8항</u>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 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 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p> <p>1. ~ 4. (생략)</p>	<p>제38조 (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 ----- ----- ----- ----- ----- ----- 1. ~ 4. (현행과 같음)</p>
<p>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 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 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300제 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2. ~ 3. (생략)</p> <p>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 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 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 는 토지 포함)의</p>	<p>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 ----- ----- ----- ----- <삭제></p> <p>2. ~ 3. (현행과 같음)</p> <p>4. ----- -----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 ----- ----- -----</p>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을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 금은 <u>1천만원</u> 을 초과 할 수 없다.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 ----- 3천만원 -----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u>200만원</u> 을 한 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1. ----- 600만원 ----- ----- ----- 가. ----- ----- 나. ----- ----- -----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 지별로 <u>1백만원</u> 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2. ----- ----- 300만원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대부료) ①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 ③ (생략)

제84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임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임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신설 2006.12.30>

⑦ (생략)

제38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6.12.30>

1. ~ 22. (생략)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

24. ~ 29. (생략), ② (생략)

제42조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경영수의사업으로 조성한 잡종재산에 대하여 제27조 및 제39조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기준 중 매각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인건비, 토지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하한으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2.30]

제47조(분수령의 설정) 삭제 <2006.12.30>

제84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재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③ ~ ④ (생략)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전공공기관에게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공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생략)